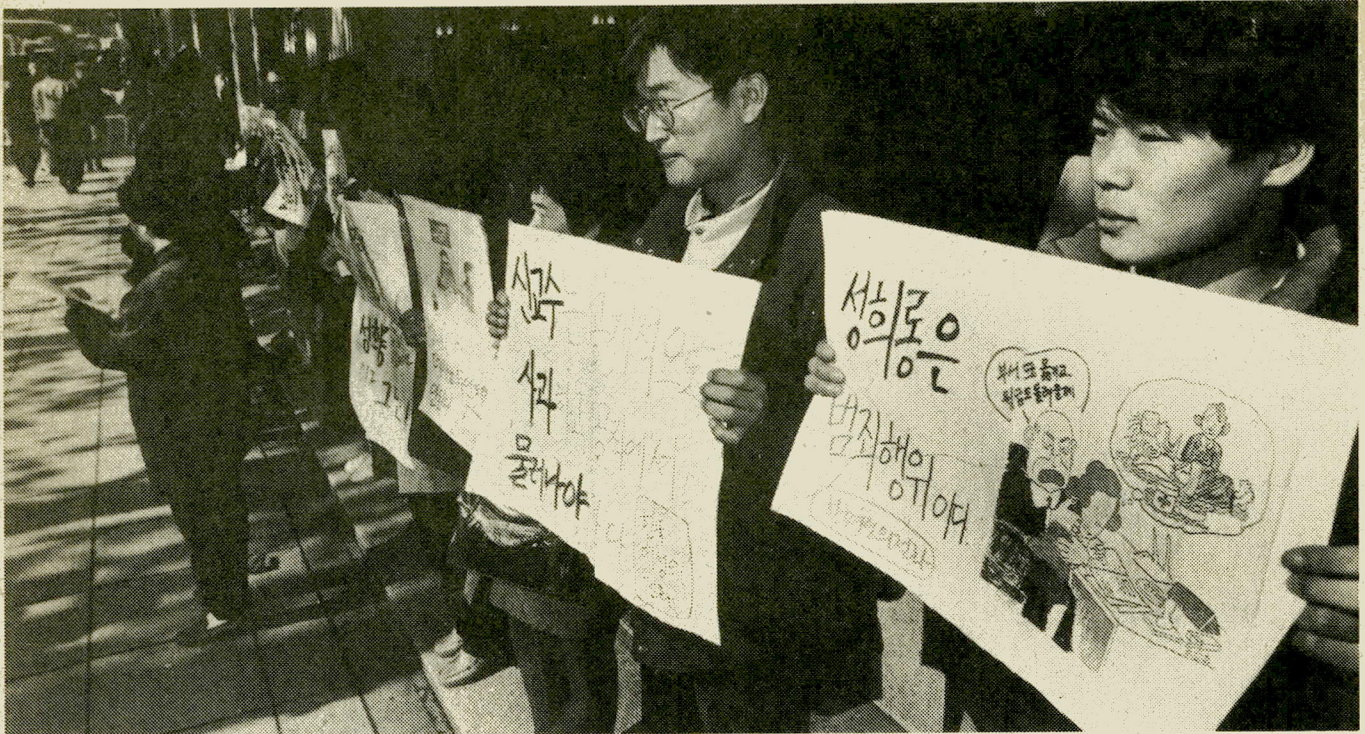




정부 차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법원 앞에서 '성희롱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대책위원회 회원들.

성희롱 법적 보완장치 급하다

형사처벌 명시'법' 없어...개념규정·전담팀 구성 절실

“앞으로 여자한테 말 한번 잘못 하거나 쳐다보다가는 3천만원 날릴 각오를 해야 한다.”

국내 첫 성희롱소송이 지난 18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난 뒤 두 세 사람만 모여도 이런 대화가 오갈 정도로 성희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인식이 안돼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부 등 정부 당국이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작업과 함께 법적·제도적 미비점의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해나가는 추세다. 정부는 물론 각 기업체와 기관에서 각각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성희롱 발생 때

구제받는 방법, 이의제기 절차,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요령 등의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10월 노동성이 직장내 성희롱 개념을 규정한 '여성고용관리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 기업에 성희롱에 대한 기본방침 설정과 남성사원들의 연수, 성희롱 관련 건의함 설치, 피해여성들을 위한 여성상담원 배치 등을 촉구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성희롱 대책을 마련한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8월 국내 처음으로 성희롱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는데도 정무제 2장관실, 노동부 등 여성정책 주무부서에서는 성희롱 전담팀 구성이나 성희롱 개념 규정 작업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정강

자 공동대표는 “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무중의 안전과 직업상의 장래성을 해치는 성차별의 대표적인 형태인 성희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여성정책 주무부서에서 성희롱 전담팀 하나 구성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여성정책 추진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해 여름 성희롱문제의 사회여론화에 발맞고 나섰던 박원순 변호사는 “이번 성희롱소송 승소를 기점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기업체들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법적·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한 국내법 조문은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을 성차별의 하나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성

폭력특별법'도 성희롱을 형법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성희롱에 관한 한 우리 사회는 황무지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적 해결의 길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은 노동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여성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작업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책을 행정지도·감독할 의무 명시 △사업장내 고충처리기관에 성폭력 전담창구 설치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남녀사원 성교육 의무화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수립 △성희롱 예방과 대책 세부지침서 발간 등을 제시했다. 신연숙 기자